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1164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이경은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20. 8.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324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방식으로 2020. 3. 3., 2020. 3. 10., 2020. 3. 12. 각 5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을 연 2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카드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8. “D은 원고에게 11,856,619원 및 그 중 11,730,895원에 대하여는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443444)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그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2020.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1/2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과 피고는 2001. 6.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21. 1. 2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D과 피고는 자녀 2명(2002년생, 2006년생)을 두고 있다.[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피고가 2021. 1. 28.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 이전인 2020. 8. 27. 이루어졌기는 하나, 협의이혼 신고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③ D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여 왔고, 피고가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8. 27. 당시 19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추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받을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3층 호 55.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1. 안양시 동안구 대 267.5㎡

대지권종류 1 소유권

대지권비율 267.5분의 28.66

.....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관할

